

#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시행내규

[ 2009. 9. 17  
내규 제372호 ]

안전지원센터 02-6311-3554

일부개정 2010. 7. 26 내규 제405호  
일부개정 2011. 9. 26 내규 제439호  
타 규정 개정 2012. 2. 13 규정 제635호  
전부개정 2014. 1. 23 내규 제513호  
타 규정 개정 2014. 9. 17 규정 제757호  
2014. 12. 26 내규 제545호  
2015. 8. 13 내규 제573호  
2015. 11. 26 내규 제585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1.26.)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5.11.26.)

## 제2장 점검 및 정비

제3조(점검 기준) ① 규정 제13조에 의한 점검의 종류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별표 1과 같다. 다만,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앙관제시스템은 관제업무처리내규에 의한다. (개정 15.11.26.)

1. 일상점검 : 7일

2. 정기점검 : 1M, 3M, 6M, 1Y, 3Y

② 기술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7일 범위 내에서 정기점검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17)

제3조의2(점검방법) 점검 및 검사방법은 별도 “유지보수 절차서”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4.12.26]

제4조(점검결과의 기록 및 조치) ① 규정 제13조에 의한 점검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각각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앙관제시스템은 관제업무처리내규에 의한다. (개정 15.11.26.)

② 소장은 점검결과 고장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치는 예방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앙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처리한 주요 사항을 유팁스(Utims)의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입력)하여야 하며 업무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무 교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

1. 계통 운영 상태
2. 설비 상태
3. 장애 발생 및 처리상태
4. 관련분야의 작업사항 및 작업 예정사항
5. 관련 분야와의 협의 사항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④ 소장은 자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상례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승강문안전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5.8.13)

제4조의2(기록보존 대상 및 기간) 기록보존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이력 : 영구 (시설물 폐기시 까지)
2. 도면(시스템결선도) : 영구 (시설물 폐기시 까지)
3. 통합업무일지 : 10년
4. 정기점검 실적 : 5년
5. 유지보수 실적 : 5년
6. 고장/장애 조치대장 : 5년

기타 사항은 기록물분류기준표(스마트시스템/문서함/분류기준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4.12.26]

제5조(보수작업전 협의) ① 소장은 승강장안전문설비 작업으로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

② 소장은 협의한 관련 부서에 세부 작업일정 및 작업사항을 재 통보하여 작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작업의 계획시행) 주요 보수작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점검결과 상례보수를 벗어난 중보수에 해당하는 작업이 요구될 때 (개정 15.11.26.)

제7조(보수작업 안전수칙) ① 상례보수는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검자가 발견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운행 중인 열차에 지장을 주거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통보 후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보수작업 시 지켜야 할 승강장안전문설비 안전수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5.11.26.)

제8조(보수작업의 시행방법) 소장은 보수작업을 시행할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 작업 전 대상설비를 정확히 파악하여 돌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 목적 · 순서 · 방법 등을 교육하여 숙지토록 하고 필요한 계측기와 자재를 준비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2. 열차 운행과 보수자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보수작업은 영업종료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작업 전 종합관제센터장과 역장에게 작업사항을 통보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시에도 또한 같이 하여야 한다.

제9조(열차 운행 중 보수작업) ① 소장은 열차 운행 중 긴급한 보수작업 시에는 종합관제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바이패스 설정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사항을 종합관제센터장 및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제①항의 보수작업 시에는 해당 역장에게 승강장 안전요원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②항을 요청받은 역장은 승강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규정 제19조의 연간 유지관리이행계획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 1. 유지관리 종별과 대상시스템 및 시설량 (개정 2014.12.26)
- 2. 유지관리 계획량 및 기간 (개정 2014.12.26)
-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6)

[조 제목 개정 2014.12.26]

제10조의2(유지관리이행계획 선정기준) 시스템의 점검, 보수, 교체, 개량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점검 : 승강장안전문설비운용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검사표 및 주기 (개정 15.11.26.)
- 2. 보수 : 점검결과(검사표) 검사기준 미달 시, 고장 또는 고장발생 우려가 있다고 관할 현업부서장이 판단될 때
- 3. 교체 : 점검결과(검사표) 검사기준 미달 시, 고장 또는 고장발생 우려가 있다고 관할 현업부서장이 판단될 때, 보수 시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시, 부품 단종 등으로 보수불가 시, 설비의 노후 및 고장 등으로 계속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 4. 개량 : 내구연한 도래 시 자체계획 및 외부전문가 종합안전진단 시행 결과에 따름, 설비의 노후 및

고장 등으로 계속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사장)될 경우

[본조 신설 2014.12.26]

제11조(청소관리) 소장은 승강장안전문설비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창호 청소는 분기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청결상태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5.11.26.)

제12조(하자관리) ① 단장 및 소장은 설비의 하자사항 관리를 공사 『계약규정』 제66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관리의 요령은 각 호에 따른다.

1. 검사시기 :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2. 검사방법 : 시설물 관리 책임부서에서 검사 분야별 · 하자 기간별 목록을 작성하여 검사한다.
  3. 하자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담당자를 지정·실시하여야 한다.
  4. 하자검사 결과는 유팁스(Utims) 내 하자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5.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최종검사(만료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하자검사 후 유팁스(Utims) 내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단장은 하자검사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자재) ① 소장은 승강장안전문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비품에 대하여 항상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

② 소장은 승강장안전문설비 주요 부품에 대하여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개정 15.11.26.)

제14조(보수기록 정리) ① 예비품 교체에 따른 중정비 입고 시에는 유팁스(Utims)의 정비의뢰서를 기술지원단장(통신전자 부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9.17., 15.11.26.)

② 정비기록은 고장종별 · 부품사용 현황파악 · 장비별 이력내역 정리 및 기능보완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③ 기술지원단장(통신전자 부장)은 입고된 각종 장비의 수리 완료 후 정비기록을 유지하여 필요시 부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7., 15.11.26.)

제15조(비상복구용품 관리) 비상복구용품은 별표 3과 같으며, 소장은 항상 사용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계측기 관리) 소장 또는 단장은 계측기류의 양·부를 검사하여 정정하거나 교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주기는 단장이 정한다.

제17조(시설물 현황 관리) 소장은 해당 시설물의 시스템별 수량 및 사용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신설·이설·증설·개량이 있을 때에는 시스템별 수량·사유 등을 파악하여 수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장치별 정비기준

#### 제1절 통칙

제18조(승강장안전문설비 제어범위) 승강장안전문설비 승강장안전문 자동 제어범위는 정위치정차 지점으로부터  $\pm 650[\text{mm}]$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15.11.26.)

[조 제목개정 15.11.26.]

제19조(바이패스 기능 유지) ① 기관사조작반에서 바이패스를 설정 시 기능 유지 시간은 30초를 원칙으로 한다.

② 종합제어반 · 승강장조작반에서 바이패스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해제하기 전까지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 제2절 창호 및 구조체

제20조(구조체) 승강장안전문설비 구조체의 유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5.11.26.)

1. 육안 확인 시 전체적인 외관상태(균열 및 뒤틀림, 도장상태)가 양호할 것
  2. 승강장안전문 가이드레일 부분 발판 및 선로측 유니트(Unit)간 연결부 고정 상태가 견고할 것
- (개정 15.11.26.)

제21조(승강장안전문) 승강장안전문의 유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5.11.26.)

1. 승강장안전문 열림/닫힘 시간은 4.5초 이내로 한다. (개정 15.11.26.)
2. 승강장안전문은 정전 등으로 축전지 방전 종료 시 개방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

[조 제목개정 15.11.26.]

제22조(비상문) 비상문의 유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개폐 동작에 걸림 현상이 없고, 가로막대(패닉바)에 의한 수동 열림이 양호할 것
2. 비상문 개방시 구동부 커버의 개폐표시등이 점멸할 것

### 제3절 구동부

제23조(구동모터) 구동모터의 유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모터 작동 시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고, 모터를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의 조임 상태가 견고할 것
2. 정/역회전시 동작상태에 이상이 없고, 모터의 회전력이 스크류에 정상적으로 전달될 것.

제24조(개별제어반) 개별제어반의 유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원전압은 DC 40[V]±15%의 범위 이내 일 것.
2. 외관 손상 및 램프 상태 · 토글스위치 조작 등 자체 제어기능 및 연동동작에 이상이 없을 것.

### 제4절 전원장치

제25조(전원절체기) 전원절체기는 절체 동작이 신속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제26조(접지저항) 탄소 접지저항은 5[Ω]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절연저항) 전원공급실 절연저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값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500[V] 이상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류기, DC-DC 컨버터 : 도체부분과 외함 사이 5[MΩ]
2. UPS : 도체부분과 외함 사이 5[MΩ]

제28조(UPS 및 정류기) UPS 및 정류기의 유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입력전압 : AC 380[V] 또는 AC 220[V]±10%
2. 출력전압 : AC 220[V] 또는 DC 48[V]
3. 부하를 연결한 상태에서 맥류 측정값이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축전지) 축전지의 유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축전지는 충전상태를 유지하고, 필요시 균등충전을 하여야 한다.
2. 축전지의 셀당 전압은 균등하게 유지하고, 온도에 유의하여 과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무보수형(밀폐형)을 제외한 축전지는 증류수를 보충하여 지정된 범위를 유지하고, 불순물을 혼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축전지관리장치(BMS)는 항상 정상 기능을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축전지는 입력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승강장안전문을 10회 이상 개폐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

**부칙(제513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15.11.26.)

점 검 기 준 표 (제3조 관련)

설비명	점 검 항 목	점 검 주 기						비 고
		7일	1M	3M	6M	1Y	3Y	
조작반	○ 종합제어반 경보 확인 - 승강장안전문설비 상태 정보현시 및 경보 확인	○						
	○ 승강장조작반 전체 열림·단힘 시험 - 도어별 소음, 간섭여부 및 개폐표시등 점등 확인 - 개폐 이상유무 확인	○						
	○ 기관사안내장치 정상동작 여부 - 표출정보 현시 상태 확인 - 정보의 정확성 확인	○						
	○ 종합제어반 정상동작 여부 - 커넥터 및 단자 접속상태 확인 - 조작부 기능 확인(설정위치별)			○				
	○ 승강장조작반 정상동작 여부 - 커넥터 및 단자 접속상태 확인 - 조작부 기능 확인(설정위치별)			○				
	○ 기관사조작반 정상동작 여부 - 커넥터 및 단자 접속상태 확인 - 조작부 기능 확인(설정위치별)			○				
	○ 청결상태 확인 및 청소	○		○	○			
	○ 개별제어반 정상동작 여부 - 커넥터 및 단자 접속상태 확인 - 조작부 기능 확인(설정위치별)				○			
	○ 기관사안내장치 현시상태 - 정위치검지장치 정상동작 여부(레이저거리측정장치, 진입센서, 정위치정차검지센서, 진출센서)				○			
	○ 지상 RF장치 정상동작 여부			○				
창호 및 구조체	○ 비상문, 기관사출입문, 선로출입문 개폐상태		○	○				
	○ 장애물검지센서 동작상태 및 청소상태			○				
	○ 페닉바, 스크류, 잠금장치 전/후면 해지장치 레버 동작상태 및 청소			○				
	○ 창호 및 구조체 상태 확인 - 승강장측 헤더박스 상태(상부마감판 포함) - 선로측 헤더박스 마감판넬 상태(수직 천정판 포함)				○		○	
○ 청결상태 확인 및 청소				○				
전원장치	○ 전원장치 정상동작 확인 - 정류기 입,출력 상태 확인 - 각종 경보 및 램프 동작상태 - 청결상태 확인 및 청소	○						
	○ 축전지 외관상태 이상유무 - 전조별 극판, 전조 균열, 파손, 연결단자부식 여부, 케이블 배선, 단자접속 상태 등				○			
	○ ATS 1,2계 절체시험(수동)				○			
	○ 정류기 입,출력 전압측정				○			
	○ 부동 충전전압 및 전조별 상태				○			
	○ 동작시험(승강장안전문 10회 개폐 동작), 방전전압 측정, 충전전압(충전압) 적정성 여부					○		
	○ 청결상태 확인 및 청소				○			
	○ 접지저항 측정						○	
	○ 절연저항 측정						○	
	○ 접지저항 측정						○	
유지보수 전산기	○ 유지보수전산기 동작 여부			○				
	○ 청결상태 확인 및 필터 청소			○				
역사 승강장안전문 설비 감시시스템	○ 전산기(모니터 포함) 동작상태			○				



**승강장안전문설비 안전수칙**(제7조③ 관련)

1. 작업 전 작업 목적과 범위, 순서와 방법 등을 숙지한다.
2. 작업도구는 제대로 갖추어 있는가 확인한다.
3. 작업 중 음주, 흡연, 장난, 농담 등을 금하고 잡념을 제거한다.
4. 사다리 및 우마 사용 시 2인 이상으로 작업에 임하며 열차의 진입을 감시하고 열차 통과 시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5. 부품 및 부속 교체 시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 후 시행한다.
6. 열차운행 중 터널내 작업 시는 반드시 열차 감시원을 배치한다.
7. 열차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작업은 반드시 관계부서와 협의 후 시행한다.
8. 비상문 점검 시 열차풍에 유의하고 점검 후 잠김상태를 확인한다.
9. 선로출입문 이용 시 열차풍에 유의하고 이용 후 잠김상태를 확인한다.
10. 야간작업 시 관련분야에 승인을 득한 후 와 협의하여 작업에 임한다.
11. 야간 선로측 작업 시 모터카 등 장비차 운행에 주의하여 작업에 임한다.
12. 승강장 작업시는 우선 열차 및 승객안전을 위하여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안전띠, 표지판, 유도원 등)
13. 전차선 근접 작업시는 2[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하며, 단전 후 작업시 접지걸이를 체결하고 작업에 임한다.
14. UPS실 점검 시 2인 이상으로 점검에 임하며 배터리 비중점검 및 증류수 보충 시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한다.
15. 휘발성이 강한 세척제를 사용할 때에는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한다.
16. 땀이나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시설물 접촉을 금한다.
17. 위험 잔재요소는 발견 즉시 제거한다.
18. 공구 및 계측기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 외 사용을 금하며 사용 후에는 잘 손질하여 지정된 위치에 보관한다.
19. 작업종료 후에는 현장정리를 한 후 동작 상태를 재확인하고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한다.
20. 사고발생 시에는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한다.

[별표 3] (개정 15.11.26.)

비상복구용품(제15조 관련)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센 서	장애물검지센서	Set	각 2	
DCU	개별제어반용	EA	2	
구동모터	승강장안전문 용	EA	2	
잠금장치	승강장안전문 용	EA	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5.11.26.)

승강장안전문설비 시스템 7일 점검(제4조 관련)

점검장소 :

검사결과 : A(정상) B(보수후정상) C(보수중) D(관찰) F(불량)

검사기간(일자) :

담당	P/L

설비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자
		상선	하선	중선		
				상선	하선	
조작반	1. 종합제어반 경보 확인 - 승강장안전문설비 상태 정보현시 및 경보확인					
	2. 승강장조작반 전체 열람·단힘 시험 - 도어별 소음, 간섭여부 및 개폐표시등 점등 확인 - 개폐 이상유무 확인					
	3. 기관사 안내장치 정상동작 여부 - 표출정보 현시 상태 확인 - 정보의 정확성 확인					
	4. 청결상태 확인 및 청소					
전원장치	1. 전원장치 정상동작 확인 - 정류기 입, 출력 상태 확인 - 각 종 경보 및 램프 동작상태 - 청결상태 확인 및 청소					

□ 정비 및 조치사항

구간(장비)명	조치내역	기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5.11.26.)

승강장안전문설비 시스템 1개월 점검(제4조 관련)

점검장소 :

검사결과 : A(정상) B(보수후정상) C(보수중) D(관찰) F(불량)

검사기간(일자) :

담당	P/L

설비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자
		상선	하선	중선		
				상선	하선	
구조체	장애물검지센서 동작상태 및 청소상태					

□정비 및 조치사항

구간(장비)명	조치내역	기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5.11.26.)

승강장안전문설비 시스템 3개월 점검(제4조 관련)

점검장소 :

검사결과 : A(정상) B(보수후정상) C(보수중) D(관찰) F(불량)

검사기간(일자) :

담당	P/L

설비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자
		상선	하선	중선		
				상선	하선	
창호 및 구조체	1. 비상문, 기관사출입문, 선로출입문 개폐상태					
	2. 패닉바, 스크류, 잠금장치, 전/후면 해지 장치 레버 동작상태 및 청소					
조작반	1. 종합제어반 정상동작 여부 - 커넥터 및 단자 접속상태 확인 - 조작부 기능 확인(설정위치별)					
	2. 승강장조작반 정상동작 여부 - 커넥터 및 단자 접속상태 확인 - 조작부 기능 확인(설정위치별)					
	3. 기관사조작반 정상동작 여부 - 커넥터 및 단자 접속상태 확인 - 조작부 기능 확인(설정위치별)					
	4. 지상 RF장치 정상동작 여부					
	5. 청결상태 확인 및 청소					
유지보수 전산기	1. 유지보수전산기 동작 여부					
	2. 청결상태 확인 및 필터청소					
역사 승강장안전문설비 감시시스템	전산기(모니터 포함) 동작상태					

□정비 및 조치사항

구간(장비)명	조치내역	기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5.11.26.)

승강장안전문설비 시스템 6개월 점검(제4조 관련)

점검장소 :

검사결과 : A(정상) B(보수후정상) C(보수중) D(관찰) F(불량)

검사기간(일자) :

담당	P/L

설비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자
		상선	하선	중선		
				상선	하선	
조작반	1. 개별제어반 정상동작 여부 - 커넥터 및 단자 접속상태 확인 - 조작부 기능 확인(설정 위치별)					
	2. 청결상태 확인 및 청소					
	3. 기관사안내장치 현시상태 - 정위치감지장치 정상동작 여부 (레이저거리 측정장치, 진입센서, 정위치정차감지센서 진출센서)					
창호 및 구조체	1. 창호 및 구조체 상태 확인 - 승강장측 헤더박스 상태(상부마감판 포함)					
	2. 청결상태 확인 및 청소					
전원 장치 (축전지)	1. 축전지 외관상태 이상유무 - 전조별 극판, 전조 균열, 파손, 연결단자 부식여부, 케이블 배선, 단자접속 상태 등					
	2. ATS 1,2계 절체시험(수동)					
	3. 정류기 입,출력 전압측정					
	4. 부동 충전 전압 및 전조별 상태	별지 제7호 서식 기록				
	5. 청결상태 확인 및 청소					

□정비 및 조치사항

구간(장비)명	조치내역	기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5.11.26.)

승강장안전문설비 시스템 1년점검(제4조 관련)

점검장소 :

검사결과 : A(정상) B(보수후정상) C(보수중) D(관찰) F(불량)

검사기간(일자) :

담당	P/L

설비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자
		상선	하선	중선		
				상선	하선	
전원장치 (축전지)	1. 동작시험(승강장안전문 10회 개폐 동작)					
	2. 방전전압 측정	별지 제7호 서식 기록				
	3. 충전전압(충전압) 적정성 여부					

□정비 및 조치사항

구간(장비)명	조치내역	기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5.11.26.)

승강장안전문설비 시스템 3년점검(제4조 관련)

점검장소 :

검사결과 : A(정상) B(보수후정상) C(보수중) D(관찰) F(불량)

검사기간(일자) :

담당	P/L

설비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자
		상선	하선	중선		
				상선	하선	
창호 및 구조체	1. 창호 및 구조체 상태확인 - 선로측 헤더박스 마감판넬 상태(수직천정판 포함)					
전원장치 (UPS)	1. 접지저항 측정					
	2. 절연저항 측정					

□ 절연저항 측정

항목 개소	도체-외함(UPS)	도체- 외함(정류기)	비 고

□정비 및 조치사항

구간(장비)명	조치내역	기 타





